



독일의 산업의 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차철환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보건전문의 제도가 채택됨에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제도의 실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본 (Occupational Health Journal)에 게재되어던 구미 각국의 산업의제도 내용중 대표적으로 독일, 이태리, 스웨덴, 불란서, 미국 등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 론

이 연구는 산업의제도 검토를 위하여 외국의 여러제도를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것으로서, 조사대상국은 이미 산업의제도가 일정기간 동안 실시되어온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독일, 핀란드, 불란서 등이다.

조사는 문헌에 의한 제도조사와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에 의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의가 되기위한 연수, 이후의 승진, 산업의의 수입에 대한 타분야 의사직간의 평가, 젊은층의 산업의선호도, 산업의제도의 성숙도, 산업의 업무실태(특히, 치료부분), 기업규모나 산업에 따른 격차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산업의 선임실태를 보면 법률로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와 기업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나라가 있는데, 이들의 향후 공통적 문제는 전 노동자에게 산업의제도 대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와 불란서가 90%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는 20~40% 정도이나, 어쨌든간에 금후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서비스제공의 확대·촉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치료서비스에 관한 것을 보면, 일본의 경우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란서나 네델란드와 같이 산업의의 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유로서 의사과잉상태인 나라에서는 산업의가 치료에 관여하게되면 지역 의사의 일을 빼앗게 되고, 임상 출신인 산업의인 경우에는 치료에 치중하게 될 경우 산업의로서의 주업무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유해업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조사를 실시한 나라에서는 모두 법적의무로서 실행되고 있었으나, 일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상이하고, 최근 까지 가장 철저하게 하는 나라는 불란서이다. 미국, 영국은 기업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간에도 산업의제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 각국의 역사, 의료제도 등의 사회적 배경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의 산업의제도

1. 산업의 계약

1) 독일의 의료환경

독일에는 가정의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의사는 일반진료를 담당할 필요가 없고 산업보건에서 요구되는 의료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산업의는 원칙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의사이며 치료활동을 하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치료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단, 노동재해나 응급시의 구호나 응급처치는 예외적으로 산업의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산업보건서비스의 책임자는 사업주로서 그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과 동시에 인원, 시설, 기자재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산업의의 선임기준

산업의제도를 연구하는 데는 산업의 선임기준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독일에서는 종업원 규모 50인 이상의 사업장, 종업원 30인 이상의 위험유해업무사업장에 산업의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선임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업장은 외부기관의 산업보건센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의의 취업형태인 전임·비전임에 대한 규정은 독일에서는 「필요투입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필요투입시간에 따라 산업의가 산업보건서비스에 종사할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투입시간은 노동재해예방 규정에 따라 사무직

노동자는 연간 0.2 시간/명, 위험유해업무직 노동자에서는 1.2 시간/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수를 만족하는 한도내에서는 산업의의 취업형태는 자유이며 종사하는 산업의가 복수라 할지라도 무방하다.

산업의를 임명 또는 해임할때는 사업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종업원의 대표위원회인 경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산업의의 신분을 보장하며 산업의의 질적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3) 기업외의 노동위생기관

산업보건센타는 산업의와 산업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상근하고 있어, 산업의의 선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높은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산업의 양성실태

산업의의 교육과정은 졸업전, 졸업후, 평생교육으로 구분된다.

졸업전 교육에서는 산업의학이 의학부에서 필수과목이며 각 대학에 산업의학 전문교실이 설치되어 있다. 졸업후 교육은 1985년부터 제도화하여 시작되었으며 4년간 전문연수과정과 2년간 연수과정으로 구성되었다. 4년간 전문연수과정에서는 2년간 내과학 중심의 임상수련과 2년간의 산업의 실무수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후 산업의학의사라는 명칭을 받게된다. 이어서 2년간의 연수과정에서는 임상연수 1년, 산업의 실무수련 9개월, 이론연수 3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후에는 사업장의학이라는 부가적 명칭이 주어진다.

산업의학 Academy라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졸업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州)의사회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산업의학 Academy의 3개월 산업의학 이론연수는 산업의학 개론, 산업의학에

관한 문제해결방법, 특수 Risk에 관한 건강관리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산업의제도가 시작된 1973년에는, 그전부터 산업보건활동을 해오던 의사에게 간이자격을 주는 과도기적 시기가 있었으나 1985년 부터는 2종류의 과정만이 실행되고 있다.

3. 산업의의 활동내용

산업의는 노동안전위생 전문요원인 안전위생기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건팀과 공동으로 산업보건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업의는 그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① 건강관리
- ② 작업관리
- ③ 작업환경관리
- ④ 총괄관리자에 대한 조언

산업의는 사업주나 노동재해예방 책임자에게 시설의 기획실행, 작업수단 조정, 보호구 선택, 노동생리학, 노동심리학, 인간공학이나 노동위생에 대한 제반 문제, 구급활동의 조직, 직장전환이나 장해자의 작업배치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4. 기타

1) 산업의학감독 행정기관

산업의학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산업의관사무소(產業醫官 事務所)가 있다. 공무원으로서 산업의관은 산업의학 문제에 관한 조언 및 지원, 유해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순회, 직업병의 진단판정, 산업의학 관련 직종의 교육, 산업의학의 강연, 계몽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 행정기관을 통하여 산업의학의 질적인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산업의가 고용되어 있을 때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하므로써 직무를 면제받으며, 산업의의 평생교육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산업보건의 질적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5. 결론

이상은 통일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불충분한 면도 있으나, 독일의 산업보건서비스의 현황을 소개했다.

산업보건서비스를 적정한 시간동안 투입하도록 규정된 점, 졸업후 평생교육체제의 완비,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외 노동위생기관으로서의 「산업보건서비스」의 존립 등 참고할 만한 특징이 있다. 금후 산업보건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